

#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45,792,708	58,373,781
일반회계	1,594,658,912	47,839,767
특별회계	351,133,796	10,534,014
공기업특별회계	256,623,322	7,698,700
상수도사업	114,898,055	3,446,942
하수도사업	141,725,267	4,251,758
기타특별회계	94,510,474	2,835,314
하수도특별회계	386,649	11,599
교통사업 특별회계	26,427,702	792,831
공원묘지관리 특별회계	276,892	8,3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83,040	53,49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17,756	90,5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905,600	87,168
기반시설 특별회계	454,483	13,634
수질개선 특별회계	59,258,352	1,777,7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123,3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